

대한드론축구협회 2019.10.1. 개정

드론축구 규정집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목 차

1. 경기장

2. 드론볼

3. 선수의 수

4. 선수의 장비

5. 주심

6. 부심

7. 경기시간

8. 플레이의 시작과 종류

9. 득점 방법

10. 반칙과 불법행위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드론축구 규정은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축구 규정을 중심으로 대학스포츠에 맞게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1. 경기장

① 경기장 표면

- ㉓ 대부분의 경우 경기장 바닥에 대해 정해진 규격은 없다. 그러나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은 피해야 한다.
- ㉔ 반면에 장비보호를 이유로 바닥에 인조잔디 또는 완충작용이 있는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완충의 정도가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올려놓았을 때 1cm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 ㉕ 바닥은 항상 평평해야 하며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

원형으로 이루어진 드론볼은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 추락이나 전복 시 다시 바로 설수 있다. 그러나 바닥이 수평하지 않을 경우 오투기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설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② 경기장의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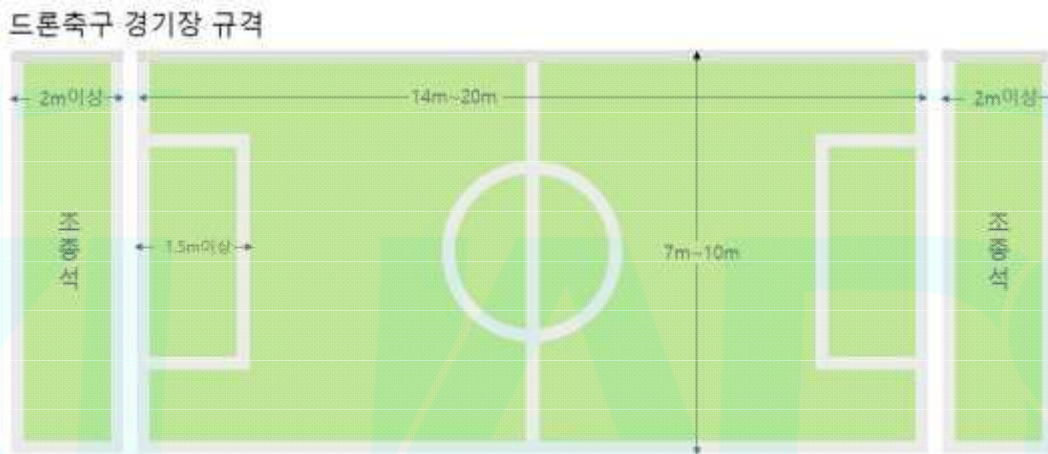
- ㉖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선으로 표시하며 장변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진 곳에 중앙선을 표시한다. 이 선들은 각 경계의 지역에 포함되고 경기장의 색상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㉗ 경기장 중앙에 협회 또는 대회 주최측에서 인정한 표식 또는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선은 명확히 인지되어야 한다.
- ㉘ 스타팅포인트는 경기장의 단변에서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선 또는 점으로 표시하되 스타팅포인트와 골의 경기장 단변 으로 부터의 거리는 항상 같아야 한다.
- ㉙ 조종석은 경기장 단변 쪽에 설치하되 조종석의 길이가 단변의 길이를 초과 할 수 없다. 조종석의 폭은 2m 이상으로 하며 기술지역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종석 뒤쪽에 경계표시를 해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타팅포인트란 경기 시작 전 드론볼이 이륙 대기하는 장소이며 경기장 안쪽에 위치한다.

선수는 경기장 밖에서 드론볼을 조작하게 된다.

③ 경기장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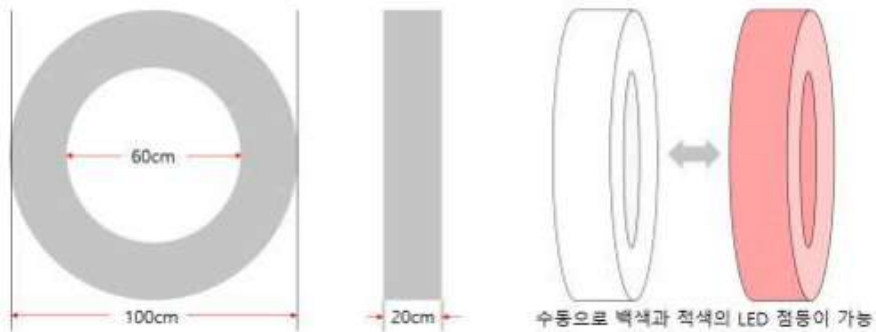
- ㉑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의 크기는 단변은 7~10m, 장변은 14~20m 이어야 하되 장변과 단변의 비율은 2:1이거나 이에 가까워야 한다.
- ㉒ 경기장의 높이는 4m~5m 이어야 하며 파손이나 경기에 장애가 우려되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㉓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장의 크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④ 골의 규격과 위치

- ㉑ 골의 형상은 원형이어야 하며 내경의 지름은 60cm 이어야 하고 외경의 지름은 10cm 이어야 한다.
- ㉒ 골은 그 중심을 경기장 단변의 중앙부에서 중앙선 방향으로 1.5m 이격된 거리에 위치 시켜야 한다.
- ㉓ 골의 높이는 골대의 중앙부가 경기장표면에서 3m ~ 3.5m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골의 설치는 1점 혹은 2점을 이용해 경기장 상부로부터 메달거나 지주를 이용해 바닥으로부터 띄워 지탱해야 한다. 이때 골의 방향은 항상 중앙부를 향하고 있어야 하며 골의 방향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 ㉔ 골의 설치는 항상 안정적이어야 하고 낙하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된다. 골은 경기중에 형상이 변하면 안된다.

드론축구 골의 규격



⑤ 골의 재질과 구성

- ㉓ 골은 경기 중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 ㉔ 골은 내부 또는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외부에 백색과 적색의 LED표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LED표시장치는 경기장 외부에서 수동으로 조작 할 수 있어야 한다.
- ㉕ 골의 외부에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 광고로 인해 골의 LED가 변경되는 것을 선수들이 인지 하는데 있어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광고는 글자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미지 또는 마크의 삽입시 글자크기를 넘어서는 안된다.

⑥ 광고

- ㉖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대회의 경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의 상징과 대회의 엠블럼을 제외하고, 임의적인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단, 대회 조직위원회를 통한 대회 운영지원 등에 따른 상업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으며 대회 규정으로 이런 마크의 크기와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㉗ 대회참가팀의 복장에 한하여 해당 팀의 상징 및 상업광고를 허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 및 종교적이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허용대상에서 제외 한다.
- ㉘ 대회 참가팀 및 모든 선수는 심판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광고문구 및 광고물에 대한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 ㉙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어떠한 형태의 광고물도 경기장 내에 비치 또는 세워 둘 수 없다.

2. 드론볼

① 품질과 규격

- ㉑ 둥근 모양의 외골격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한다.
- ㉒ 드론볼의 지름은 $40\text{cm} \pm 2\text{cm}$ 이어야 한다.
- ㉓ 플레이 도중 드론볼의 무게는 $1,10\text{g}$ 이하 이어야 한다.
- ㉔ 외골격의 개방된 단일 면적이 150cm^2 이하 이어야 한다.

외골격의 개방된 단일 면적이 150cm^2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드론볼을 제작할 때 드론 외부를 감싸는 보호 프레임의 수가 과도하게 적게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보호프레임의 수가 과도하게 적다면 무게는 줄어들어 드론볼의 비행성은 향상될 수 있으나 잦은 간섭과 파손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드론볼의 규격에 관한 사항은 경기전에 측정되어야 하며 측정장비의 오차를 인정, 허용치에 관한 사항은 대회규정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② 광고

- ㉑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대회의 경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의 상징과 대회의 엠블럼 그리고 볼 제조회사의 등록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는 다른 모든 형태의 상업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㉒ 대회 규정으로 이런 마크의 크기와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공인구

- ㉑ 협회로부터 공인받은 공인구는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 전에 별도의 드론볼에 대한 규격을 검토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
- ㉒ 공인마크가 없는 드론볼 또는 직접 제작한 형태의 드론볼은 협회규정 2-①의 준수여부에 대해 경기전에 참가 가능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한다.

일반부의 경우 공인구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전장부품(모터, FC, 변속기, 배터리, LED 등)의 변경 및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레임과 관련한 부분은 협회에서 사전에 공인 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2-①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④ 볼에 표식

- ㉓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팀의 드론볼이 다른팀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게 LED색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당팀의 골잡이 역시 같은팀과 다른팀 모두로부터 확연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한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팀 구분을 위한 LED 표식은 수평의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숫자의 LED가 보이도록 원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된 LED의 지름은 최소 20cm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40cm 이내이어야 한다. 또한 개별 LED소자의 수는 10cm당 6개 이상 이어야 한다.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팀구분 LED는 대회전 사전에 사용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 ㉔ 골잡이의 표식은 대회규정으로 정하며 표식 등의 부착시 경기중 파손되거나 이탈되어서는 안된다.
- ㉕ 골잡이 표식 이탈 책임은 근본적으로 해당 팀에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 항의하거나 재경기를 요구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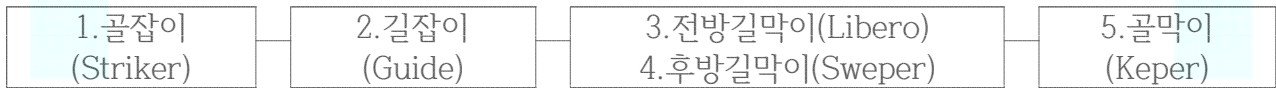
⑤ 사용 주파수

- ㉖ 드론볼의 무선 컨트롤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전파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전파의 범위 및 세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 ㉗ 그러나 상기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조종자 이외 타인의 드론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파수 범위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선수의 수

① 선수들

- ㉓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수는 10인으로 제한한다. 이 경우 선수명단에 포함되는 지도자의 수는 3인 이하로 제한된다.
- 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의회 주최 경기는 대학생만 선수로 가능 하다.
- ㉕ 경기는 양팀 각각 5명 이하 선수와 5개 이하의 드론볼로 구성되어 플레이 된다. 이때 선수는 1인당 1개의 드론볼만 컨트롤 해야하며 선수의 수와 드론볼의 수는 동일하다.
- ㉖ 한팀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골잡이를 제외한 포지션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 ㉗ 만약 사전에 경기 시작 시간이 충분히 고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세트 시작 전 골잡이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선수가 조종석에 위치하지 않고 있을 경우 해당 경기는 기권패로 간주하게 된다.

5인의 출전선수를 요구하는 경기에서 어느 한 선수 또는 두 선수의 드론볼이 세트 플레이 도중 파손되어 다음 세트 시작전에 드론볼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팀은 그 세트에 한해 3인 혹은 4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 정비시간 부족을 이유로 경기가 지연 되서는 안되며 모든 선수는 본인의 기체 상태를 알고 심각한 정비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격하 플레이를 자제 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선수 또는 예비 드론볼이 있는 경우 보충하여 5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 중인 두선수가 서로의 조종기를 교체하였다면 1인당 1개의 드론볼을 조작해야 한다는 상기조항의 위배로 해석한다. 만약 세트 도중 골잡이의 기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 경기가 불가능할 경우 그 세트는 더 이상 득점 할 수 없다. 이 경우 다음세트 시작 전까지 골잡이의 기체가 정상적으로 작동 되도록 수리되거나 골잡이를 교체해야 한다.

② 선수교체

- ㉘ 선수교체는 세트 시작 전 가능하며 세트가 시작되어 플레이 중일 때는 불가능 하다.
- ㉙ 세트와 세트 사이 교체가 가능하더라도 사전에 선수명단에 없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

㉔ 선수명단 범위 내에서 선수교체 횟수와 인원의 제한이 없다.

③ 교체 절차

㉕ 선수교체는 플레이중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교체사실과 교체대상 선수를 확인받아야 한다.

㉖ 선수를 교체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교체된 선수는 조종석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 선수교체시 선수가 사용하던 드론볼은 교체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위반과 처벌

㉗ 해당 세트에 참여하는 선수가 아닌 사람이 조종석에 머물고 있을 경우 1회의 경고가 주어진다. 1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에 계속해서 머물 경우 해당 세트는 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㉘ 경기에 참여중인 선수가 아닌 사람은 그 어떤 조종기도 만지거나 조작해서는 안된다.

㉙ 경기 중 양팀의 벤치 혹은 응원석에서 경기 중인 드론볼에 바인딩 되어있는 조종기를 조작할 경우 관련 팀의 해당 경기는 몰수된다.

4. 선수의 장비

① 기본 장비 선수의 기본적인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진다.

- ㉠ 복 장 -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유 복장 혹은 단체복, 다만 자유복일 경우 팀 구분이 가능한 모자, 조끼 혹은 A4 사이즈 이상의 표식 등을 패용하여야 한다 .
- ㉡ 드론볼 - 규정에 맞는 드론볼
- ㉢ 조종기 - 해당 선수의 드론볼과 바인딩 되어 있는 조종기 1대
- ㉣ 배터리 - 경기에 필요한 여분의 배터리

② 부가 장비

- ㉠ 1인칭시점 영상장비
 - 선택사항으로 1인칭 시점 영상장비의 착용 또는 휴대 가능
- ㉡ 여분의 드론볼
 - 드론볼의 파손에 대비한 여분의 드론볼 휴대가 가능하며 배터리는 분리되어 있어야 함.
- ㉢ 기타 악세사리
 - 경기운영에 필요한 배터리 체커기 및 응급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

③ 금지 장비 선수의 아래와 같은 장비 착용 및 휴대는 금지된다.

- ㉠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 할 수 있는 발광 기능이 있는 장비
- ㉡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 할 수 있는 전파 발신 장비
- ㉢ 경기의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는 음향 관련 장비
- ㉣ 기타 안전상 또는 경기진행상 필요해 의해 금지된 장비 및 장구

④ 위반과 처벌

- ㉠ 상대팀은 경기 시작 전 서로의 장비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신의 장비는 상대팀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 경기 시작 전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장비의 착용 및 휴대를 포기할 경우 경기는 정상적으로 시작된다.
- ㉢ 금지장비 위반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 전 상대팀의 용인 사항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는다.
- ㉣ 그러나 위반의 시작 또는 인지가 플레이 중에 발생하여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심판에 의

해 판단될 경우 해당 세트는 몰수된다.

⑤ 장비에 광고

- ㉓ 기본 및 부가 장비에 정치적, 종교적인 문구를 삽입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다만 문구의 내용이 관용적인 표현일 경우 심판의 판단 하에 용인 될 수 있다.
- ㉔ 이 조항의 위반은 경기 전에 정정되어야 하며 정정되지 않은 사항이 경기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승패에 영향을 주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선수가 속한 팀은 경고 되어야 한다.



5. 주심

① 주심의 권위 드론축구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해 매 경기가 관리 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 되어야 한다.

② 권한과 임무 주심은 모든 경기를 원활하고 부드럽우며 공정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권한을 갖는다.

㉠ 드론축구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 부심들과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 사용되는 볼이 규칙2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한다.

㉣ 선수의 장비가 규칙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 한다.

㉤ 경기의 사고를 기록 한다.

㉥ 경기 규칙의 어떤 위반이 있을 경우, 주심의 재량권으로 경기를 중지할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주심의 견해로 경기 중 장비에 의한 부상이 있을 경우 해당 선수를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지 않은 팀 임원들에게 대해 조치를 취한 다음 주심의 재량으로, 팀 임원을 기술 지역 또는 경기장 주변에서 추방시킬 수 있다.

㉩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 한다.

㉪ 경기가 중단된 후 경기의 재개를 알린다.

㉫ 세트중간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5분 이상의 휴식과 작전타임을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외부 방해로 인해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 시킬수 있다.

③ 주심의 위치

㉠ 주심은 주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심의 위치는 경기의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기 중인 모든 선수가 관측 가능해야 한다.

㉡ 주심은 경기의 전반적인 통제를 위한 유무선 장비를 휴대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통제실을 두어 해당 장소에 위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심의 위치는 모든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주심의 결정

- ㉓ 플레이와 관련된 득점 여부 그리고 경기의 결과를 포함한 사실에 대한 주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㉔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바꿀 수 있다.
- ㉕ 주심이 위반 신호를 하고 부심들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 된다면 주심의 결정이 우선이다.
- ㉖ 지나친 간섭 또는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에, 주심은 부심의 임무를 완화할 수 있고 그들의 임무를 재배치하고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㉗ 필요시 주심은 경기장 내에 설치된 영상장치의 판독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정을 번복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상장치 판독요구 결정은 오로지 주심의 유일한 권한이다.

⑤ 주심의 책임

주심(또는 관련된, 부심)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㉘ 선수, 임원, 관중이 당한 부상
- ㉙ 재산상 발생하는 손해
- ㉚ 경기 규칙의 의거한 결정사항 또는 경기진행 및 운영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 개인, 클럽, 회사, 협회 또는 기타 단체에 끼치는 손상
- ㉛ 기타 경기 운영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기 외적인 사항

주심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 ㉜ 경기장 또는 그 주변의 조건, 기후 조건이 경기의 개최를 허용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
- ㉝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를 포기할 결정
- ㉞ 경기에 사용되는 부속 장비 및 드론볼의 적합성에 대한 결정
- ㉟ 관중의 방해 또는 관중석 지역의 어떤 문제 때문에 플레이를 중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㊱ 치료를 위해 부상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하기 위해 플레이를 중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㉔ 부상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경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결정
- ㉕ 선수가 특정 복장 또는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할지 아니면 허용하지 않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
- ㉖ (팀 또는 경기장 임원, 안전 책임자, 사진사 또는 다른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기장 근처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결정 (주심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 ㉗ 주심들이 경기 규칙에 따라 또는 경기가 플레이 되는 협회 또는 리그 규칙 혹은 규정에 의해 주심들의 임무에 일치하여 취할 수 있는 기타 결정

6 주심의 자격

- ㉘ 심판(주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㉙ 협회는 드론축구 규정의 통일되고 일관된 적용을 위해 심판연수 등을 실시 해야 한다.

7 주심의 신호

- ㉚ 주심은 호각 등을 이용하여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하며 양팀의 모든 선수가 볼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 ㉛ 주심은 아래와 같은 통일된 신호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운영상 다른 신호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시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구분	10초 전	경기시작	패널티 부여	경기종료
수신호				
호각	 길게 1회	 짧고 길하게 1회	 짧게 2회	 길하게 1회, 짧게 1회

6. 부심

① 부심의 권위

- ㉠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드론축구 경기 규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 부심들은 양팀의 조종석과 관중석 사이의 적절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골과 스코어 보드를 동시에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
- ㉢ 부심은 필요시 주심의 지시에 의해 규칙5에서 정한 통제실 등에 위치하여 경기를 통제 할 수 있다.

② 권한과 임무

- ㉠ 주심을 도와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 ㉡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한다.
- ㉢ 선수의 장비와 복장, 번호를 경기장 입장 전에 확인한다.
- ㉣ 선수 명단과 출전 선수를 확인한다.
- ㉤ 양팀의 경기준비 사항을 주심에게 알린다.
- ㉥ 경기 중인 선수와 선수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인 한다.
- ㉦ 주심보다 골에 가까운 위치에서 득점 여부를 주심에게 알린다. 이때 필요시 깃발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세트의 전체 스코어를 카운트 하여 세트종료 후 주심에게 알린다.
- ㉧ 기술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의 행동을 감독하고 벤치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면 주심에게 알린다.
- ㉨ 외부 방해에 의한 플레이 중단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기록한다.
- ㉩ 주심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역할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경기에 한해 주심을 대신한다.
- ㉪ 경기장 및 기술지역, 관중석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부심의 자격

- ㉠ 심판(부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 협회는 드론축구규정의 통일되고 일관된 적용을 위해 심판연수 등을 실시 해야 한다.

④ 부심의 신호

- ㉓ 주심은 깃발 등을 이용하여 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알려야 하며 양팀의 모든 선수가 볼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 ㉔ 부심은 아래와 같은 통일된 신호를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운영상 다른 신호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시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구 분	득점인정	득점 불인정	복귀선언	복귀완료
깃 발				
LED	 붉은색으로 변경	 흰색 유지	 붉은색 유지	 흰색으로 변경

7. 경기시간

① 플레이의 시간

- ㉠ 경기는 주심과 양 팀 사이에 서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한 세트에 3분씩 3세트로 진행된다.
- ㉡ 플레이 시간을 변경하기 위한 동의는 반드시 플레이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대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회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정비 및 중단

- ㉠ 세트가 진행되는 도중 작전타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 각 팀은 세트와 세트사이 정비시간을 이용해 정비와 작전타임을 병행해야 한다.
- ㉢ 정비와 작전타임을 5분 이상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심이 원할한 경기운동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 그러나 양팀중 어느 한팀이 플레이 준비가 안 된 것은 정비시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없다.
- ㉤ 만약 어느 한팀에게 3명 이상의 정비 지연으로 세트패가 선언되었을 경우 주심은 다음세트 시작까지 규정된 시간외에 5분의 추가시간을 부여 할 수 있다.
- ㉥ 주심에 의해 경기시작 10초전이 선언된 때부터 세트 종료시까지 누구도 경기를 방해하거나 멈출 수 없다.
- ㉦ 다만 주심이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심에 의해 경기가 중단 될 수 있다.
- ㉧ 안전에 의한 문제로 주심에 의해 경기가 중단 된 때는 중단시점의 스코어와 잔여 시간이 관리되어 경기의 재개시점에 동일하게 적용 되어져야 한다.
-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경기가 중단되며 이때 해당 세트는 무효 처리 된다.
 - 경기장의 붕괴 혹은 파손으로 인해 드론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
 - 경기장내 시설물중 일부의 파손 혹은 붕괴로 인해 어느 누구든 부상이 발생 했거나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안 될 경우
 - 정전 혹은 경기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더 이상 경기를 지속 할 수 없을 경우

③ 경기의 포기

경기전에 주심과 양팀 사이에 서로 동의되지 않는다면 경기의 포기 및 지연은 패배로 간주한다.

8. 플레이어의 시작과 종료

① 경기준비

- ㉓ 동전으로 토스해서 이긴 팀이 좌우 조종석의 선택권을 갖는다. 이때 한번 결정된 조종석은 3세트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심의 판단 하에 좌우 조종석의 위치가 불공정 하다고 생각 된 때는 변경 할 수 있다.
- ㉔ 양팀의 주장 및 선수는 한번 결정된 조종석의 위치에 대해 항의하거나 변경 요청 할 수 없다.
- ㉕ 양팀의 조종석이 확정되면 양팀의 주장은 득점해야 할 골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② 플레이어의 시작과 종료

- ㉖ 주심 혹은 주심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음향 신호로 각각의 3분 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알린다.
- ㉗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음향신호는 최소 10초 전에 예비신호를 내보내야 한다.
- ㉘ 경기장 상황에 따라 예비신호의 횟수를 늘리거나 조정 할 수 있으나 반드시 1회 이상의 예비신호가 있어야 한다.
- ㉙ 경기시작 신호는 예비신호 10초 선언 후 별도의 음향 또는 수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예측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주어져야 한다.

③ 다음 세트의 시작

- ㉚ 세트종료후 다음세트 시작시까지 주심은 5분의 정비시간을 부여 할 수 있으며 5분 카운트가 시작되는 시점은 모든선수가 각자의 드론볼을 수거하여 경기장에서 퇴장한 시점이다.
- ㉛ 5분의 정비시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모든 드론볼은 스타팅포인트에 정렬 되어있어야 하며 선수들은 조종석에 위치해야 한다.
- ㉜ 만약 정비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기장안에 머물러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는 자신의 드론볼 혹은 정비중인 드론볼과 함께 경기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 ㉝ 주최측에서 요구하는 골잡이의 표식 및 팀표식 LED의 정정은 5분안에 포함되지 않으며 5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요구에 의해 다시 경기장에 들어가 수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해당선수는 골잡이 표식 및 팀 LED외에 다른부분을 정비하면 안된다.
- ㉞ 만약 골잡이의 드론볼이 정비미흡을 이유로 경기장에서 퇴장 당했거나 경기시작 10초전 신호가 선언되기 이전에 심판에게 정비미흡으로 인한 비행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면 주심은 해당팀에게 골잡이 표식의 교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팀은 골잡이를 교체 할 수 있다.
- ㉟ 주심은 정비시간 5분후에 양팀이 표식 및 LED등의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경기시작 10초전을 선언하여 다음세트를 시작한다.

9. 득점방법

① 득 점

- ㉠ 상대팀의 골에 골잡이의 드론볼이 통과 하면 이를 득점으로 인정한다.
- ㉡ 그러나 득점 당시 오프사이드에 걸려있거나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골잡이는 고의로 상대의 골을 뒤로 통과 할 수 없다. 만일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의 골을 뒤로 통과했을 경우 하프라인 자기진영까지 되돌아 간 후 다시 공격을 시도해야 한다.
- ㉣ 위의 ㉡는 오프사이드 상황과는 무관하며 이를 어겼을시 패널티가 부여된다.

② 오프사이드

- ㉠ 득점에 성공한 팀은 반드시 모든 선수가 하프 라인 후방의 자기 진영까지 되돌아간 후에 다음 득점을 시도해야 한다.
- ㉡ 만약 골잡이가 득점 후 자기진영으로 돌아와 다음득점을 시도하려 할 때 자기 팀의 어느 한 선수가 하프라인 뒤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이를 오프사이드 상황으로 간주하며 골잡이는 해당선수가 하프라인 뒤로 나오거나 해당 세트를 포기하기 전까지 하프라인을 넘어 득점을 시도 할 수 없다.
- ㉢ 만약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상대진영에서 통제불능이 되었을 때는 부심에게 알리고 조종기를 내려놓은 후 조종석을 떠나야 한다.
- ㉣ 상대방의 드론볼을 고의로 자기진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서 상대의 추가득점 시간을 연장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 ㉤ 만약 연속득점 제한규정을 고의로 연속해서 어겼을 시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②의 중대한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되어 세트패가 선언된다.

③ 골잡이 이외의 선수 득점

- ㉠ 골잡이 이외의 선수가 상대골을 통과하여 득점을 한때는 득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패널티도 없다.
- ㉡ 그러나 골잡이 이외의 선수가 고의로 자기 골을 통과하거나 골대 안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 ㉢ 만약 골잡이 이외의 선수가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골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골의 바깥으로 돌아나와 원위치 해야 한다.

④ 패널티킥

다음의 경우 패널티킥이 부여된다.

- ㉠ 9-① 골잡이가 상대 골을 뒤로 통과하여 득점을 시도한 경우
- ㉡ 9-② 오프사이드 규정을 무시하고 연속득점 했을 경우
- ㉢ 9-③ 자기 진영 골을 뒤로 부터 통과하거나 골의 안쪽에서 수비를 할 경우

⑤ 패널티킥 방법

패널티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다.

- ㉠ 시 기 : 매 세트 종료후
- ㉡ 방 법 : 골잡이와 골막이의 1:1 대결
- ㉢ 시 간 : 패널티 1회당 5초
- ㉣ 패널티킥은 1명의 골잡이와 1명의 골막이의 1:1 대결로 이루어지며 패널티킥의 시작점은 골잡이의 경우 하프라인, 골막이의 경우 골의 하단부 이다.
- ㉤ 심판의 신호 이후 5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득점방식은 플레이 도중 일 때와 같다.
- ㉥ 주어진 시간 안에 다득점이 가능하며 이경우도 9-②-㉠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A팀이 3회의 패널티를 부여받고, B팀이 1회의 패널티를 부여받았다면 패널티킥 숫자를 상계하여 A팀이 2회의 패널티킥 권한을 갖는다. 이때는 A팀의 골잡이와 B팀의 골막이의 대결로 10초간 이루어진다.

⑥ 승리 팀

- ㉠ 한 세트 동안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그 세트를 가져간다.
- ㉡ 양 팀이 같은 수의 득점 또는 무득점이라면, 해당 세트는 무승부 이다.
- ㉢ 3세트 동안 더 많은 세트를 가져간 팀이 승리 팀이다.

⑦ 무승부

- ㉠ 경기에서 세트 득실 결과 무승부라면 1회 3분의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를 실시 할 수 있다.
- ㉡ 연장전의 방식은 이전 세트의 방식과 동일하다.
- ㉢ 다만 대회규정에 무승부가 인정된다면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실시하지 않는다.

⑧ 승부차기

승부차기의 방식은 패널티킥의 방식과 동일하되 양팀은 각각 3명의 선수가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10. 반칙과 불법행위

- ㉓ 반칙과 불법행위에는 경고, 세트패, 경기패가 있으며 경고의 경우 같은 경기에서 3회가 누적되면 세트패로 간주한다. 그러나 심판에 불응하여 동일한 사유로 경고를 연속해서 2회 이상 받을시 즉각 세트패가 선언 된다.
- ㉔ 세트패는 해당 세트를 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경기패는 해당경기를 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경 고

- ㉓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아닌 사람이 조종석에 머물고 있을 때
- ㉔ 경기 중 심판, 상대선수 혹은 관중에게 경미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 ㉕ 경기 중인 드론볼에 신체가 접촉되었으나 의도적이지 않을 때
- ㉖ 사전 양해 없이 의도적이거나 혹은 정비 미흡 등의 이유로 경기가 지연 될 때
- ㉗ 경기시작 신호 이전에 단순히 드론볼을 움직였을 때

② 세트 패

- ㉓ 해당세트에 참여중인 선수가 아닌 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경기 중인 드론볼이 조작될 경우
- ㉔ 경기 중 심판, 상대선수 혹은 관중에게 중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
- ㉕ 경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경기 중인 드론볼을 무선조종이 아닌 물리력을 이용해 움직였을 때(손, 발 또는 기구)

③ 경기 패

- ㉓ 고의적으로 드론볼을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하는 등의 안전에 위해한 행동을 했을 때
- ㉔ 경기 중 심판, 상대선수 혹은 관중에게 심각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때